

협력업체 행동규범

1. 목적

하나머티리얼즈주식회사(이하 "하나머티리얼즈"로 함)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하나머티리얼즈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와의 상호 공동의 이익과 상생협력을 추구하고자 본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2. 행동규범 대상 및 준수 노력

하나머티리얼즈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업체 그리고 협력업체와 거래중인 하위 협력업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본 규범에서 정한 내용 중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기한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나머티리얼즈와의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준법/윤리경영

하나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는 준법/윤리경영에 힘써야 하고 모든 경영 활동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투명성 제고 및 부당이익 제공 금지

- ① 협력업체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의 부정,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협력업체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업체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활동과 성과,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공개할 수 있다.
- ④ 법령 위반 및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협력업체에 내용을 알리고 협력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불공정거래방지

- ① 협력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하도급 관련법령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협력업체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아니된다.
- ④ 협력업체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 또한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2, 3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서 미 발급, 대금 미지급 등의 공정거래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공급망 관리

- ① 협력업체는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환경오염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취득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②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2, 3차 협력업체의 제품, 서비스가 인권침해, 환경오염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활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자체 기준과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계약조건 등에 맞게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신변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업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인신변을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개인정보 및 지식 재산권 보호

- ① 협력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거래 중에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② 협력업체의 지식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업영위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취득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인권존중

하나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는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구성원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가의 노동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가. 차별금지

- ① 협력업체는 학력,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임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임직원 채용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 ③ 협력업체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노동 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 근로시간관리

- ① 협력업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최대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가능한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법정 휴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휴게시간 보장 및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라. 인도적 대우

- ① 협력업체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차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협력업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협력업체는 임직원을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 임직원의 요청 등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해 임직원에게는 적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강제노동금지

- ① 강요, 구속 또는 기타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며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협력업체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을 자행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환경경영

협력업체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수립한 환경 경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환경 경영 수행을 위한 점검, 개선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가. 법규준수 및 관련 인허가 취득

협력업체는 기업 운영상 필요한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 변화를 파악하여 개정사항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 기후 위기 대응

- ① 협력업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나머티리얼즈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슈 및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대기 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업체는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 하고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 배출해야 하며 배출량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① 협력업체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폐기 물량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안전경영

하나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머티리얼즈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 및 안전관리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가. 법규준수

① 협력업체는 국가의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

나. 안전진단

① 협력업체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국제 표준화 기구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는 사업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고 관리 및 비상상황대응

① 협력업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질병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재해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① 협력업체는 국가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는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력업체의 임직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수립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협력업체는 사업장 내에 안전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 변경 시 업무 배치 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경영시스템

하나머티리얼즈의 협력업체는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리스크를 파악/관리해야 한다.

가. 자율준수 의지 표명

협력업체는 본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추진계획 및 이행 성과 등을 공유해야 한다.

나.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업체의 경영진은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

다. 정보공개 및 리스크 관리

- ① 협력업체의 준법/윤리, 환경, 인권, 안전분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령 및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각 분야별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고충처리제도 운영 및 거래업체 하위 협력업체 관리

- ① 협력업체는 임직원이 준법/윤리, 환경, 인권, 안전 분야의 법률 및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② 협력업체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데 있어 계약을 체결한 거래업체(하위 협력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중요 사항을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거래업체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 및 하위 협력업체에게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